##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경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440

발의연월일: 2021. 11. 19.

발 의 자:김경만・김두관・김수흥

김주영 · 김진표 · 박성준

이병훈 · 이성만 · 이용우

진성준 · 홍성국 의원

(11일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기업은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기업에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 권에 대하여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고 향후에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으로 인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울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 을 지급받는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.

하지만 매출채권보험제도는 채권 만기일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중소기업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임.

이에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중소기업팩토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,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(안 제2조제11호, 제28조제1항제9호 및 제29조제7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#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"중소기업팩토링"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(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채권을 말한다)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해당 중소기업에 지급하고, 그 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.

제28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0호(종전의 제9호) 중 "제8호"를 "제9호"로 한 다.

9. 중소기업팩토링

제29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중소기업팩토링 업무에 관한 사항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11. "중소기업팩토링"이란 기술
	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매출
	채권(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
	하고 취득한 채권을 말한다)
	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면
	서 그 대금을 해당 중소기업
	에 지급하고, 그 매출채권의
	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
	을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.
제28조(기금의 업무) ① 기금은	제28조(기금의 업무) ①
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9. 중소기업팩토링
<u>9.</u>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3호	<u>10.</u>
의2, 제4호, 제4호의2, 제4호	
의3 및 제5호부터 <u>제8호</u> 까지	<u>제9호</u>
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	
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	
인을 받은 업무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29조(업무방법서) 기금은 다음	제29조(업무방법서)

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 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이를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1. ~ 6. (생 략) <신 설>

,
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중소기업팩토링 업무에 관한
<u>사항</u>
<u>8.</u> (현행 제7호와 같음)